

電子製品의 施設材導入時

關稅減免에 대하여

政府가 우리 企業에 대하여 쏟는 精誠은 대단하여 우리들 企業人은 이를 피부로 느껴 고맙게 여기고 있다. 政府가 企業育成을 위하여 베푸는 여러가지 支援施策 中, 關稅減免制度에 關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筆者는 關稅問題의 專門家도 아니며 더구나 關稅減免에 關한 깊은 研究를 體系의로 해본 일도 없다. 다만 電子部品生産이 主宗業인 筆者의 企業體에서 施設材 導入에 따른 關稅減免問題가 일어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적이 있어 혹시 이 問題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關稅減免의 惠沢을 받고자 하는 分들에게 參考가 될가해서 이 誌面을 빌려 보기로 한다.

關稅減免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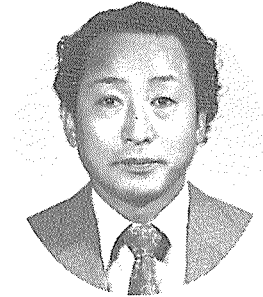
우리가 物品을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면 稅關에서 關稅를 물게 된다. 이 關稅는 매우 중요한 目的과 機能을 갖고 있다. 國家의 財政收入 確保에

큰 몫을 차지하고, 國內産業을 保護 育成하는 目的外에 産業構造의 調整, 物資의 流通· 需給의 調整, 나아가서는 國內의 物價安定을 기하는 등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關稅는 國家財政 收入의 確保와 國內産業의 保護 育成이라는 目的에서 볼 때 되도록 많이 받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關稅로 말미아마 國內産業 發展이 阻害되는 일도 일어난다.

따라서 關稅를 賦課하는 稅率은 一定不變으로 固定시킬 수 없으며 그때 그때의 經濟狀況에 따라 變動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關稅率의 調整만 가지고는 적절한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

政府에서는 어버이와 같은 慈愛心으로 모든 企業 또는 産業을 똑같이 보살피고 支援해 주고 싶어도 現實의로 不可能할 뿐더러 非經濟的이고 非效果의이라 全體的인 經濟發展 靑写真에 따라



韓國電氣音響(株)
代表理事 高 錫 英

優先部門에 대해서는 選擇의인 支援을 아끼지 않는 것이 政策이며 어떤 選擇된 優先育成 部門産業에 대하여는 징수하는 關稅를 減해 주거나 免除해 주는 特惠를 준다. 이것이 곧 關稅減免인 것이다.

關稅率의 調整과 關稅減免運用은 關稅行政의 核心的 業務이며 이의 合理的인 運用은 國家經濟에 지대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認識하고 넘어가야 한다.

2. 關稅減免의 對象

現行의 關稅法은 1967年에 制定된 이래 數次의 改正을 거쳐 왔고 이 法 속에서 다루고 있는 關稅減免의 對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外交官免稅

關稅法 27條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外國의 外交官에 대하여는 그 公用品 및 自由品에

대하여 關稅를 免除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外交使節에 대한 免稅特權은 治外法權과 함께 오랜 國際慣行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相對國에서 하는 処遇에 따라 相互의인 條件이 있다.

2) 重要産業減免稅(第28條의 1)

自立經濟建設에 基幹이 되는 重要産業의 育成과 發展을 促進시키는 目的아래 政府는 현재 9個 對象産業을 選定하여 이들이 輸入하는 施設과 機械類 등에 대하여 關稅를 減免해 주고 있다. 9個産業은

- (1) 化學工業
- (2) 第1次金屬製造業
- (3) 一般機械製造業
- (4) 電氣機器製造業
- (5) 輸送機械製造業
- (6) 科學計測 및 調整機器製造業
- (7) 機械部分品製造業

特輯 · 部品工業의 現況과 問題點

(8) 電子機器原材料製造業

(9) 電氣鐵道運輸業 등이다.

3) 資源開發產業 減免稅(法28條의2) 2)

農業·林業·牧畜業·水産業·鉸業·發電 및 送電業 등이 이의 對象이다.

4) 防衛産業用品 減免稅(法 28條의3) 3)

自主國防態勢確立에 필요불가결한 防衛産業의 育成發展을 위한 조치로서 對象業種은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 및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指定하기로 되어 있다.

5) 原料品減免稅(法 28條의4) 4)

稅關長이 指定하는 工場에서,

- (1) 船舶과 그 內燃機
- (2) 航空機와 그 部分品
- (3) 配合飼料

(4) 農藥 등을 製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部品 및 原材料 중 財務部長官이 先示하는 物品에 대하여 關稅를 減免할 수 있다.

6) 學術研究用品 減免稅(法 28條의5) 5)

政府가 教育 및 學術振興을 위하여 學校 또는 訓練院에서 使用케 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學術研究用品, 教育用品, 實驗實習用品, 그리고 公共 醫療機關, 博物館, 圖書館 등에서 사용하는 機器, 圖書, 標本 등은 關稅減免 對象에 든다.

7) 特定物品免稅(法 28條의6) 6)

이 條項은 宗教慈善事業, 社會福祉, 國民體位의 向上 및 公共利益의 追求 등 社會·文化政策의 目的을 위한 制度이다.

{ 8) 再輸出免稅(法 29條의1) 1)

관광객 등 一時的인 入國者의 휴대품, 展示會의 展示品, 國際運送用 컨테이너, 包裝容器 등은 再搬出(再輸出) 될 性質의 것으로서 搬入日(輸

入日)로부터 6個月 이내에 再輸出 조건으로 關稅가 免除된다.

9) 再輸出 減免稅(法 29條의2) 2)

이 條項이 앞의 것과 다른 것은 그 對象과 再輸出期間이다. 外國으로부터 工事用機械나 修理加工用機械, 船舶 등을 賃借去來로 長期間 使用 후 再輸出 하는 경우 輸入時의 關稅를 減免해 주는 制度이다. 단 再輸出 期間은 3年이다.

10) 政府用品 등 免稅(法 30條) 10 條)

이 條項의 範圍는 매우 넓다.

- (1)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에 寄贈되는 物品
- (2) 國家元首와 그 家族이 使用하는 物品
- (3) 政府가 輸入하는 軍需品
- (4) 우리나라를 訪問하는 外國元首와 그 隨行員에 속하는 物品
- (5) 우리나라 居住者에 대하여 授與되는 勳·記章, 表彰品
- (6) 記錄文書, 書類
- (7) 外國에 駐留하는 國軍 또는 在外公館에서 返送하는 公用品
- (8) 우리나라 船舶 또는 運輸機關이 槽難으로 인하여 解體된 경우 그 解體材 및 裝備品
- (9) 우리나라와 外國間의 교량 通信施設 등 건설·수리에 所要되는 物品
- (10) 國家安保上 緊要하게 輸入되는 非 通信用 및 電波管理用 物品
- (11) 政府가 輸入하는 公報用 物品
- (12) 旅行者의 携帶品
- (13) 우리나라로 居住를 옮기기 위하여 入國하는 者의 移徙品
- (14) 外國貿易船 또는 貿易航空機 乘務員의 휴대물품
- (15) 商用見品 또는 廣告用 物品
- (16) 우리나라 居住者에 寄贈되는 小額物品

- (17) 우리나라 輸出品의 品位, 權威, 品質 등을 保障, 表示하는 目的의 權威있는 外國機關의 証票 또는 Label.
- (18) 船舶 또는 航空機의 被害復舊 및 瑕疵補修用品

11) 特殊用品 免稅(法 31條)

政府의 事業契約을 遂行하기 위하여 外國契約者가 輸入하는 業務用品, 國際機構로부터 派遣되는 顧問官의 使用品

12) 輸出用 原資材의 減免稅(法 32條)

우리 業界가 가장 많이 利用하고 있는 制度

13) 損傷減免(法 33條) 條)

輸入申告한 物品이 輸入免許 前에 變質, 損傷된 때에는 關稅減免 받을 수 있는 制度

14) 再輸入 免稅(法 34條) 條)

加工이나 修理의 目的으로 輸出된 物品, 一般 輸出物品, 輸出物品의 容器 등이 一定期間內에 再輸入 되는 경우에 免稅하는 制度

3. 關稅減免이 決定되기까지

우리가 輸入하는 設備나 機械類가 關稅減免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누구나 궁금할 것이다. 關稅法을 살펴 보면 關稅의 減免을 받을 수 있는 큰 條目의 태두리들이 列擧되어 있으며 이는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면 이 範圍에 속하는 모든 業種들이 關稅減免의 對象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範圍 안에서 政府가 關稅行政的인 次元에서 支援·育成하고자 하는 業種을 別途로 財務部令으로써 選定 指定한다. 이 選定은 國家經濟與件의 變動에 따라 이에 對処하는 政策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 왔다. 現在 우리가 그 規制를 받고 있는 現行의 財務部令은 1979

年 2月 16日에 公布된 것으로서 이를 參考로 紹介한다.

중요산업관세경감대상업종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 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적용에 있어서 2종이상의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의 가능한업종으로 분류적용함.

(1) 화학공업(비료·농약·펄프·방사성물질·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전해화학제품제조업 및 석유정제업에 한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 질소비료제조업 ㉡ 인산비료제조업

㉢ 칼륨비료제조업 ㉣ 복합비료제조업

나. 농약원제 제조업

다. 석유정제업(유탄유기유제조업을 포함하며 유탄유·그리스조제·파라핀정제 및 폐유재생업을 제외한다)

라.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제조업

① 나프타 분해업

② 에틸렌글리콜제조업

③ 아세트알데히드제조업

④ 스틸렌모노마제제조업

⑤ 펜타에리스리톨제조업

⑥ 폴리에틸렌제조업

⑦ 2염화에틸렌제조업

⑧ 염화비닐모노마제제조업

⑨ 아크릴로니트릴제조업

⑩ 폴리프로필렌제조업

⑪ 옥타놀제조업

⑫ 부타놀제조업

⑬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제조업

⑭ 스티렌브타디엔고무제조업

- 15 폴리에틸렌 고무제조업
- 16 카프로락담제조업
- 17 알킬벤젠제조업
- 18 휘늘제조업
- 19 무수말레인산제조업
- 20 무수프탈산제조업
- 21 테레프탈산제조업
- 22 메타놀제조업
- 23 석유수지제조업
- 24 크실렌분류업

마. 전해화학제품제조업

- ① 가성소다제조업(연산 100,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 ② 염소제조업(연산 150,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화학펄프제조업(연산 100,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방사성 물질제조업
아. 시멘트제조업

(2) 제 1차 금속제조업

가. 제철제조업(조강기준 연산 200,000톤 이상 또는 1차 증설후 연산 200,000톤 이상이 되는 생산규모로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공정시설 또는 제강·압연의 공정시설에 한한다)

나. 특수강제조업(연산 100,000톤 이상의 제강생산능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강시설에서 경영하는 압연업을 포함한다)

다. 무계목강관제조업(소관제조시설을 갖춘 연산 5,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라. 금속주물제조업(연산 5,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하며 다이캐스팅주물제조업과 동·동합금 또는 알루미늄의 압연·압출업을 포함한다)

마. 주강물제조업(연산 15,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단조물제조업(연산 3,0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비철금속제련업 및 정련업

아. 용접합금강관제조업(연산 2,500톤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3) 일반기계제조업

가. 원동기제조업

- ① 디젤기관(4기통 이상의 것에 한하며 소구식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업
- ② 증기터어빈제조업
- ③ 발전용수력기관제조업
- ④ 산업용보일러제조업(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500톤, 최고증기압이 1평방센티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금속공작기계제조업(한국공업표준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정밀도가 그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 ① 선박제조업
- ② 드릴링반제조업
- ③ 보오링반제조업
- ④ 미이링반제조업
- ⑤ 평삭반제조업
- ⑥ 연삭반제조업
- ⑦ 기어공작기계제조업
- ⑧ 전용공작기계제조업
- ⑨ 나사가공기계제조업

다. 금속소성가공기계제조업

- ① 에어햄머제조업
- ② 연속신선기계제조업
- ③ 압연기계제조업
- ④ 기계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⑤ 액압프레스(정밀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 수준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 ⑥ 전단기(가공길이 2,8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라. 토목건설 및 광산기계제조업

- ① 착암기계제조업
- ② 트랙터를 기저로 한 중기계제조업

③ 아스팔트 휘니싱기제조업

④ 천공기제조업

⑤ 파마쇄기제조업

마. 선박용보기제조업

① 조타기제조업

② 자동정상력계선기제조업

③ 프로펠라(직경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④ 스텐어렌지멘트제조업

바. 농업기계제조업

① 농경기제조업

② 콤파인제조업

③ 곡물건조기제조업

④ 이앙기제조업

사. 섬유기계제조업

① 방적준비기제조업

② 방적기제조업

③ 연속식염색휘니싱기제조업

④ 자동직기제조업

⑤ 권사기제조업

아. 합성수지가공기계제조업

① 사출성형기(열가소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1,500그램 이상인 것, 열경화성수지의 것은 용량이 1회 사출당 500그램 이상인 것과 2색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② 압출성형기(용량이 1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자. 유압 및 유체압기기제조업

① 유압모터(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② 유압조절밸브(압력이 1평방센티미터당 14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③ 송풍기(15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④ 밀폐식냉매압축기제조업

⑤ 유압펌프 및 실린더제조업

⑥ 공기압기기제조업

⑦ 기계압축기제조업

차. 펄프 및 지류제조기계제조업

① 쇄목기제조업

② 장망식초지기제조업

카. 화학기계제조업

① 분리기(연속식 또는 용량이 1시간당 3,000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② 연속식여과기제조업

③ 전기집진기제조업

④ 반응기(내식 또는 고압형의 것으로 교반기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⑤ 혼합기(용량 500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⑥ 열교환기제조업

타. 산업용기계제조업

① 공업용로제조업

② 크레인제조업

③ 원치제조업

④ 호이스트제조업

⑤ 자동용접기제조업

파. 포장기계제조업

① 제대충전기제조업

② 상포기제조업

③ 진공포장기제조업

하. 구조장치제조업

① 믹스물러제조업

② 샌드밀제조업

③ 쇼트부라스트제조업

④ 모듈덤머시인제조업

(4) 전기기기제조업

① 직류발전기(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② 직류전동기(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③ 교류발전기(출력 24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④ 교류전동기(출력 1,500킬로와트 이상

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⑤ 변압기(용량 4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⑥ 차단기(용량 10,000 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조업

⑦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계제조업

⑧ 무선전신전화송수신기(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업

⑨ 항행용무선기기제조업

⑩ 레이더제조업

⑪ 무선원격제어기기(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업

⑫ 관세율표 세번 제 8459 호·제 8511 호에 해당하는 고주파·방사선·초음파 및 레이저 응용기기제조업

⑬ 휴대용전자시계제조업

(5) 수송기계제조업

가. 조선업(경합금선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는 철강선박건조업과 총톤수 100,000 톤 이상인 선박입거용선거를 갖춘 수리업에 한한다)

나. 철도차량제조업(보기기제조업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 제조업

라. 트랙터(4륜이상인 농업용 및 증기기관용의 것으로 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을 포함한다) 제조업

마. 항공기제조업(수리업을 포함한다)

(6)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가. 자이로콤파스제조업

나. 마이크로미터제조업

다. 전기계측기기(오차율 0.5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 제조업

라. 수치표시식 또는 원격제어식 측정기기제조업

마. 관세율표 세번 제 9011 호·제 9020 호 또는 제 9028 호에 해당하는 고주파·초음파·

방사선 및 레이저응용기기제조업

바. 관세율표 세번 제 9028 호에 해당하는 비전기적량의 전기식 측정·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정기기제조업

(7) 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 8205 호·제 8207 호·제 84류 내지 제 91류 물품제조업에 한한다.

가. 호환성공구(관세율표 세번 제 8205 호·제 8207 호 물품에 한한다) 제조업

나. 금속공작기계부분품제조업(관세율표 세번 제 8448 호의 1의 것에 한한다)

다. 금형제조업

① 프레스용다이(부렌킹다이 및 벤딩다이를 제외한다) 제조업

② 포장용다이(특수강제의 것에 한한다)제조업

③ 다이캐스팅용다이제조업

라. 밸브제조업

① 자동제어밸브제조업

② 비자동밸브제조업

마. 베어링제조업(볼베어링 및 톨러베어링에 한하며 연산 2,000,000 개 이상 규모의 자동라인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바.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변속기와 전동축에 한하며 연산 50,000 개 이상 규모의 생산설비의 것에 한한다.

사. 내연기관부분품제조업(전장품에 한한다)

아. 차량부분품제조업

① 연료분사장치제조업(노즐 및 기화기를 포함한다)

② 브레이크장치제조업

③ 크라취장치제조업

④ 스티어링아셈블리제조업

⑤ 조향부분품제조업

⑥ 스티어링넥클제조업

⑦ 오일펌프제조업

⑧ 피스톤·피스톤핀제조업

⑨ 피스톤링·피스톤라이너제조업

- ⑩ 메탈베아링제조업
- ⑪ 휴엘펄프제조업
- ⑫ 워타펄프제조업
- ⑬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
- ⑭ 스위지제조업
- ⑮ 쇼크업서버제조업

자. 전자기기부분품제조업

- ① 전자관(크라이트론·마그네트론 및 도파관을 포함한다) 제조업
- ② 광전지제조업
- ③ 반도체소자제조업(가공웨이퍼를 포함한다)
- ④ 압전기결정소자제조업
- ⑤ 자기기억소자제조업
- ⑥ 발진소자제조업
- ⑦ 써비스타제조업
- ⑧ 초소형전자회로제조업
- ⑨ 액정표시기제조업
- ⑩ 리이드프레임(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⑪ 자기헤드제조업
- ⑫ 웨라이트코아제조업
- ⑬ 영구자석제조업
- ⑭ 키보드제조업
- ⑮ 산화은전지제조업
- ⑯ 테이프택크메카니즘(녹음·녹화 또는 자료기억용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⑰ 스위치(2극이상인 것에 한하며 민생용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업
- ⑱ 음반재생용카이드릿치(무빙마그네틱형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⑲ 브라운관용전자총제조업

(8)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 가. 세금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나. 세알루미늄선(반도체소자 및 초소형전자회로용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다. 고순도규소(순도 99.999% 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봉 및 박판제조업

- 라. 인공수정제조업
- 마. 전자판용유리제조업
- 바. 칼라텔레비죤부라운관용웨도우마스크제조업
- 사. 인쇄회로용동박적층판제조업
- 아. 자기기록필름(자성체도포공정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 자. 인청동 및 양백의 봉·판 및 편지의 제조업
- 차. 세라믹의 봉·판 및 편지의 제조업
- 카. 폴리에스터필름제조업
- 타. 전자급화공약품제조업
 - ① 티탄산발롬제조업
 - ② 감마헤마타이트제조업
- 파. 전자급가스제조업
 - ① 알곤제조업
 - ② 질소제조업
- 하. 마그네틱트와이어(직경 0.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조업

(9) 전기철도운수업

[별표 4]

자원개발산업관세감면대상업종

일러두기

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 분류내용과 표기상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적용하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감면업종 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함.

나. 감면업종 적용에 있어서 2종이상의 물품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적용함.

關稅減免 對象業種은 위와 같이 選定되어 있지만 실제로 關稅를 減免해줄 品目은 누가 定하는가? 이것 역시 財務部告示로서 定해지는 데 이 告示는 숨에 비해서 자주 公示된다.

여기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것은 重要産業으

로 關稅減免 對象業種으로 指定된 200 余個의 業種이 減免稅의 惠澤을 받을 수 있는 品目은 總 430 種에 달하고 있지만 1개 業種이 430 個 品目を 모두 關稅減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點이다. 關稅減免 品目指定告示에는 品目마다 그 品目과 關聯이 있는 業種이 明示되어 있어 우리가 減免稅를 받을 수 있는 品目の 範圍는 한 층 좁아진다. 이 品目도 國內에서 生産이 되고 있을 때에는 減免의 惠澤이 取消된다.

이렇게 불매 한 企業이 그가 施設改替나 增設을 위하여 輸入하는 設備 또는 機械類가 關稅減免의 恩典을 받게 되려면 여러 過程의 資格審査를 通過하여야 한다. 첫째 關稅法이 規定한 重要産業의 範疇에 들어야 하고 다음에 財務部令이 選定하는 業種 리스트에 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財務部告示로서 公告되는 品目名單에 올라야 함은 물론 品目과 業種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關稅減免의 支援를 받기란 그 어려움이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4. 電子製品製造業과 關稅減免

電子製品業種으로서 關稅減免對象이 되는 것은 電子機器部品製造業의 20 個 業種과 電子機器原材料製造業의 12 個 業種으로 모두 32 個 業種이다. 이 業種의 대부분이 部品·原資材製造 業種이며 그 大部分이 電子産業의 尖端을 달리고 있는 部門이거나 基礎의인 役割을 하는 業種들이다.

電子産業이 未來産業이라는 意味는 모든 産業에서 頭腦·神經의 役割을 담당·遂行하는 것이 바로 電子機器이며 電子産業이 모든 産業을 先導한다는 事實을 認定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未來産業의 主役은 電子産業이다. 이것은 電子産業이 生産面에서 首位를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餘他産業을 先導하고 支配하는 位置에 선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갖고 있는 能力과 可能性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위의 事業에 수궁이 갈 것이다. 人間이 宇宙를 征服하고 未來에 挑戰하는 原動力이 컴퓨터이며, 로보트의 登場으로 生産은 自動化가 實現되며 家庭의 TV와 連結될 때 萬卷의 情報가 우리네 안방으로 配達될 것이다.

政府에서 電子産業分野 育成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電子産業의 發達없이는 全體産業의 水準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電子振興誌 2 月号에도 紹介되어 있지만 政府는 商工部 公告 제 81 - 3 号로서 電子工業振興을 위한 基本計劃을 公告하였다. 앞으로 電子産業을 主導할 24 個 業種을 重點의으로 支援, 育成할 政府의 施策을 具體的으로 밝히고 있다. 政府가 積極的으로 밀어 주겠다는데 우리들 企業은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決意가 굳어진다.

關稅減免 目的의 하나가 國家의 重要産業의 振興, 育成에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와 같은 關稅行政의 方針에는 變動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사실 現今의 企業體의 企業力이란 마치 疫病을 치르고 난 人間의 體力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回復期에 있는 人體에는 한대의 營養注射라도 큰 效果를 주는 법이다. 關稅減免 制度는 그 效果가 營養劑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時期에 이 制度가 적절히 利用될 때 政府가 노리는 政策的인 目的은 意外로 빨리 達成될지도 모른다.

現行의 關稅減免制度와 對象業種, 對象品目이 오랜 동안의 實務經驗에서 檢討되고 다루어져 現實性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實際로 現地에서 뛰는 企業人의 立場에서 볼 때 꼭 對象에 들어서 마땅한 業種들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業種追加나 品目追加는 定期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할 수도 있으니 만큼 關稅減免 對象을 넓고 깊게 잡아 보다 많은 電子工業企業들이 이에 參與하여 이 나라 電子産業의 發展, 나아가 國家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